

(공인장부)

세경 1234 - 924

15-6065

수신 수신처참조

제부 훈령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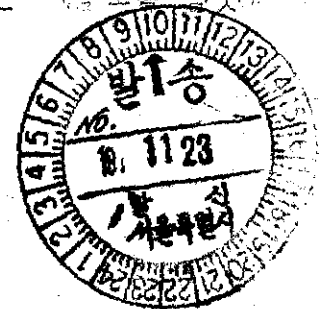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훈령 제 477호 (77.11.22) 서울특별시 세입부 과장 기관 과 공무원의 실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법집과 같이 발령하였기 통적이나 시 산하 전 세입부 과장 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출처의 준수하도록 할것이며

2. 직시를 관장하는 기관의 인사 관할관은 일의로 세부 공무원에 다른 업무에 차출 근무케 하거나 현 보좌에서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도 발령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정계 처분 또는 직부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체 적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한다.

3. 구 출장소의 세부 1,2과장, 세부과장은 직부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속 세부공무원이 세부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차출되거나 전보 또는 파견 발령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과장에게 유선 보고후 서면으로 그 전말을 보고 통보 할것.

4. 구 구출장소의 세부과장은 세부 1,2과 세부과에 근무중인자의 명단을 법집 서신에 의하여 파악, 주급별도 추성 77.11.30 일 적용토록 할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477호 1부, 1부, 1부



문 서 처 리 진	일시	77.11.24	결재	
	접수번호	1659	수행자	
	전경장		처리한	년 월 일
	발령처	서	직장	부 별 시

수신처 시산하 전기관 (경찰국 제외)

서울특별시 세입금 과징 기관과 공무원의 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1973. 5. 28. 훈령 제 367호

개정 1977. 11. 22. 훈령 제 47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세입금 과징 기관과 과징 담당  
공무원 (이하 "과징원"이라 한다)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이에  
상응한 인상 필당을 행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사항) (1) 이 규정에 의한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목표 달성률 실적
2. 부과액과 징수 실적
3. 체납액의 징수 실적
4. 추징액과 징수 실적

(2) 제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기관별, 회계별로 당해기관의 세입금  
징수율이 매월 15일까지 전월분 및 전월까지의 실적 누계를 종합하여  
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 및 관리) (1) 세입금 징수 담당 기관별 실적은 다음 과목에  
의하여 세정국장이 평가 한다.

1. 수입보고서
2. 세입금 등기내 및 납기후 과징 원본
3.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서
4. 추징액 징수 실적 보고서

(2) 과징원의 근무 실적은 기관별 조수 계장의 평가 하고 소속 과장이 이를  
확인 한다.

제4조 (평가기준) (1) 기관 및 과징원의 근무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수입목표대 경수 실적 40%

2. 부과액 대 경수 실적 40%

3. 처납액 대 경수 실적 10%

4. 추경액대 경수 실적 10%

제5조 (상벌등) (1) 세입금 경수 유공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년2회 이상 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2) 시세 및 세외수입금 과징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특별 승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무국장은 세입금 과징 실적이 극히 불량한 기관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분취 또는 인사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경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무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차출 근무하지 하거나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 할 수 없다.

다만,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시세과징 증감공무원중 내근 사무정리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73.5.28. 훈령제 367 호)

이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7.11.22 훈령제 477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제 과정 기관과 공무원의 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77 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서울특별시 훈령제 477 호

서울특별시 시세과장 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시세과장 기관과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제목중 "시세과장 기관" 을 "세입금 과장 기관" 으로 한다.

제1조 본문중 "시세과장 기관" 을 "세입금 과장 기관" 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납외대 징리 실적

4. 추징외대 징수 실적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기관별, 회계별로 당해기관의 세입징수관이 제월 15일까지 전월분 및 전월까지의 실적누계를 증합하여 시장(참조 세정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시세" 를 "세입금" 으로, 같은 "시세과장월보" 를 "세입금 납과내 및 납기후 과장 월보" 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납외징수 실적 보고서

4. 추징외 징수 실적 보고서

제3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2) 과장외 근무 실적은 기관별 소속 계장이 평가하고 소속과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4조 제1항중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부담액 징수 실적 40%

008

2. 부과외대 징수 실적 40%

3. 제남외대 정수 실적 70%

4. 추정외대 정수 실적 10%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제5조 (상벌등) (1) 세입금 정수>유용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년2회 이상 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 할 수 있다.

(2) 시세 및 세외수입금 과징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특별승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무국장은 세입금과징 실적이 극히 불량한 기관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국 또는 인사조치를 적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무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차출 근무케 하거나 3년 이내에 다른부서로 전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밖까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의약180-

75-7694

1977. 10. 14.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대통령령 공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령 ( 대통령령 제 8709호 77. 9. 30 ) 이 공포 되었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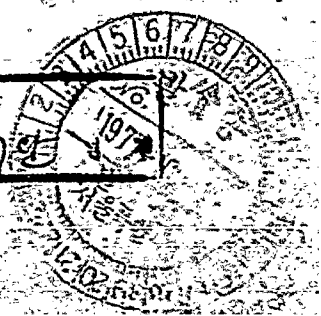
첨부 대통령령 제 8709호 1부. 끝.

수신 사 처 리 인	정수	77. 10. 15	결재	
	합본	1473	수령자	
	전거		처리할	
	통과		지시사항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사22-27.



010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내무부

민정서

행정처

사무과

인사과

교육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외국인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내무부

민정서

행정처

사무과

인사과

교육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외국인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민정문화관광과



서 울 특 별 시

학약 200-208

75-7694

1977. 10. 1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기업병원 인원 정원 재정에 따른 지시

계	계장	과장	팀장
			

1. 서울특별시 조례 제 1167호 ( 77.9.26 서울특별시기업병원 설치  
 조례등 개정조례 ) 및 서울특별시 구청제 1722호 ( 77.9.26 ) 서울특별시  
 장공직원 구청 개정규칙)와 관련 세부지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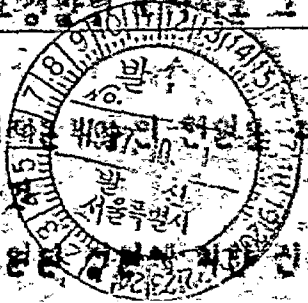
2. 위에 리거 조례 및 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시보 제 624호로 시달되  
 어 기업병원 인원정원이 개정되었기 이에 따른 시행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  
 롭사함을 시달하야 시행에 걸지를 기함것  
 (전통 의약 290-322, 77. 10. 5 ) 기업병원 인원 인사발령에 따른 지시는 본  
공문으로 택제시행)

가. 기업병원 인원 정원등 관련 개정된 내용은 협의 정원개정으로  
 를 왕조하여시행에 착수업도록 함것( 계약의종 및 정원을 시보 제 624호에  
 의거 함해한것임)

나. 지방공공의 행정발령 인원은 인사 151-2630 ( 77.10.5 )로 시달  
 되었기 착수 업도록 함것

③. 지방공공의 고용원과 감감의원을 공인 개정된 정원액 외가 현재  
근무중인 인원을 의무로 하여 각종 변경등으로 보정하여 구청과를 증시  
보고 함것

④. 행정원은 지방공공의 직원 인  
수선하여 개정규칙으로 보정하여 감감의원을 보정  
⑤. 개정조례 및 규칙의 의거 후 원



주식 제외함것

라. 개정된 조용원 및 잡근직 정원에 의거 현원을 조정 (직종 변경등) 발령조치가 전연불가한 현원 (예: 면허종 소지가만 발령할수 있는 직종등)에 대하여는 별첨양식 1 에 의거 위 "다"항 결과보고서 명단 첨부보고 할것

마. 잡근직중 임시간호원에 대하여는 시립병원 간호원(임시직) 정원 운영계획 (의약200- 77. 10. 10) 에 의한 정원에 의거 준수 시행하코 현재 근무 중인 임시 간호원은 정원에 위배되는 현원이 있으나 ( 77.10.5 현재) 정규 간호직 특채로 ( 10 -11월에 정) 조정될것이나, 착오 없기 바란.

ㅇ. 임시간호원은 10.5 현재 시립병원 총정원( 160명)에 위배된 현원이 있으나 정규간호직 특채로 조정될때까지는 병역별 발령사항이 있을시 사전 의압국와 협의후 보건사적 공장승인하의 시행보통 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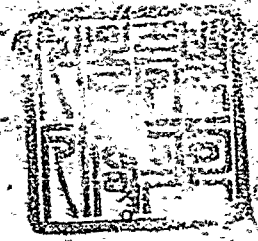
ㅇ. 현재기준 ( 10.5 현재) 임시간호원 명단을 별첨양식2에 의거 제출할것 (10.12 까지보르)

바. 현 시립병원 근무 기동직이 대하여는 시보제 517호 ( 77.3.17) 제 37페이지 정정사항을 참고 시행해 착오 없도록 할것

ㅇ. 기동직 현원 명단을 별첨 "양식 3"에 의거 제출할것 (2개년)

첨부 1. 시립병원 인원 정원 개정현황표, 1매

2. 양식1매 (양식 1, 2, 3 호). 끝.



서 울 특 별 시

규정 제 27 조 보건사외국차 전결  
구정에 의하여 권봉나 전결

013

주신처 서사 28-27 (각기보안관장)

양식

시립병원 의료봉사단 (양식 1)

(양식)

소속	직명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양력)	직업 (양력)	주 소	의료봉사단 (부속기관)
1							
2							

(양식 2)

시립병원 의료봉사단 (양식 2)

77. 10. 5 현재

소속	직명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양력)	직업 (양력)	주 소
1						
2						

(양식 3)

시립병원 의료봉사단 (양식 3)

(양식)

77.

소속	직명	성명 (한자)	직업 (의사)	생년월일 (양력)	주 소
1					
2					

# 市立病院人員定員改正現況 (改正職種別表示)

職種別	合計			江 南			永登津			東 部			兎 童			西 大 門			精 神			備 考
	現定員	改正定員	増減	現定員	改正定員	増減	現定員	改正定員	増減	現定員	改正定員	増減	現定員	改正定員	増減	現定員	改正定員	増減	現定員	改正定員	増減	
合計	531	587	+56	144	159	+15	66	68	+2	67	72	+5	98	110	+12	114	129	+15	42	49	+7	
一般職																						
小計	361	361	0	117	100	-17	37	37	0	36	38	+2	86	86	0	67	77	+10	18	23	+5	
保健職	41	57	+16	12	16	+4	6	9	+3	6	9	+3	6	8	+2	8	11	+3	3	4	+1	臨時採用者9名 放棄採用者7名
看護職	320	304	-16	105	84	-21	31	28	-3	30	29	-1	80	78	-2	59	66	+7	15	19	+4	(専任)
雇員																						
小計	106	106	0	26	22	-4	9	7	0	8	0	+1	11	13	+2	35	36	+1	17	17	0	
運搬員	15	18	+3	4	6	+2	2	2	0	3	3	0	2	3	+1	3	3	0	1	1	0	
煙房工	11	16	+5	2	4	+2	2	2	0	1	2	+1	1	2	+1	3	4	+1	2	2	0	
守衛	36	38	+2	5	7	+2	3	3	0	3	3	0	3	3	0	10	10	0	12	12	0	
打字員	2	7	+5	1	2	+1	0	1	+1	0	1	+1	1	1	0	0	1	+1	0	1	+1	
雜夫	36	27	-9	12	3	-9	1	1	0				4	4	0	18	18	0	1	1	0	
民衆補助	6	0	-6	2	0	-2	1	0	-1	1	0	-1				1	0	-1	1	0	-1	
雜給職(臨時)																						
小計	64	120	+56	1	37	+36	20	22	+2	23	25	+2	1	11	+10	10	16	+4	7	9	+2	
醫師補助	0	8	+8	0	4	+4	0	1	+1	0	1	+1				0	2	+2				
看護員	60	100	+40	0	30	+30	19	19	0	22	22	0	0	10	+10	12	12	0	7	7	0	
交換員	(16)	(19)	(+3)	(4)	(4)	(0)	(3)	(4)	(+1)	(3)	(4)	(+1)	(2)	(2)	(0)	(3)	(3)	(0)	(2)	(2)	(0)	(1) 消化器科 検査員
放射技士	0	1	+1													0	1	+1	0	1	+1	
營養士	4	6	+2	1	1	0	1	1	0	1	1	0	1	1	0	0	1	+1	0	1	+1	
冷凍技士	0	1	+1	0	1	+1																
医療機器修理工	0	1	+1	0	1	+1																
臨時心電師 (臨時採用2名 臨時採用1名 臨時採用1名)																						(2)

市立病院人員定員 56名増員

정 정		
정정사항	요	정
시보 609호 <u>P62-4</u>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부칙중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정원중 승진 전보등을 한 후 이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급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조례 시행 또는 적용일로부터 18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의 현원중 승진 전보등을 한 후 이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급의 현원에 대하여는 이조례 시행 또는 적용일로부터 18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은 고용원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이 결원될때까지로 한다.
P62-3	제 4 조중 <u>「지방의무기감」</u>	<u>「지방의무부기감」</u>
P62-7	별표 2 중 「영등포병원과 등부병원 사이줄」을	삭제
P62-12	7종 4 을 「도시개발자로요원 2」	도시개발자로요원 1」
P62-16	1 중 「차량기술원 2」	「차방기술원 2」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의약200-

79-7694

1977. 10. 11.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시립병원 간호원 (임시직) 정원 운영계획

계	개장	과장	선장

1. 서울특별시 규칙제 1722 ( 77.9.26 ) (서울특별시 잠금직원 규칙중 개정규칙 )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 잠금직원 규칙 개정에 따라 시립병원 임시간호원 정원이 개정되었으나

3. 연시립병원 환자 진료업무량을 감안하여 병상과 같이 임시간호원 전원을 상당적으로 병원간 조정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시임에 걸쳐 기함건 ( 발령시 사전의약과 총제로함 )

가. 연 강남병원 환자 진료업무량 양을 감안하여 정원에서 10명을 줄이고 병동중심으로 진료 업무량이 증가되는 병원에 증원 조정운영

나. 단 강남병원 환자 진료 업무량이 증가되어 운영이 불가할시는 재조정 함.

첨부 시립병원 간호원 (임시직) 정원 운영계획 1부.      공.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사22-27( 각시립병원 )

017



# 市立病院看護員(臨時職)是受進學計劃

病院別		区分	合計	正規職	臨時職	備考
合計	當初(臨時)		380	320	60	
	改正(臨時)		404	304	100	
	暫定		404	304	100	
三浦	當初		105	105	-	
	改正		114	84	30	
	暫定		104	84	20	
永登寺	當初		50	35	15	
	改正		47	25	22	
	暫定		52	25	27	
東部	當初		52	30	22	
	改正		51	29	22	
	暫定		54	29	25	
児童	當初		80	80	-	
	改正		88	75	13	
	暫定		88	75	13	
西大門	當初		71	59	12	
	改正		78	66	12	
	暫定		78	66	12	
精神	當初		22	15	7	
	改正		26	19	7	
	暫定		28	19	9	
備考						

市立病院看護員總計104名暫定進學中94名也(備考10名)